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96년도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및 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소각장가동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및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음.
- 주민편익시설을 지역주민의 건강, 문화증진에 기여하는 복합 생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2001년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시 환경관리센터 시설중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되었음)
- 스포츠시설은 전문지식 및 경험을 요하는 시설로서 운영초기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정착시키고 수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제2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의 범위를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기타자료(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계획안)

1. 시설현황

■ 시설명 :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시설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4,107평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건축연면적 : 1,666평
- 주요시설
 - 지상3층 : 수영장 244평(25m×4레인), 강당 128평
 - 지상2층 : 헬스장 67평, 에어로빅장 30평
스넵코너 49평, 탁구 및 당구장 60평
 - 지상1층 : 선수용숙소 223평(30명×4실), 식당 107평
 - 지하1층 : 스퀘시장 45평(2면)

■ 시설명 : 제2공설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1번지 일원
- 면적 : 10,510평
- 시설규모 : 다목적운동장(인조잔디구장)1면
테니스장 4면, 관람석 2,406석, 창고1동,
라커룸 1동, 화장실 1동

2. 민간위탁 추진 원칙

- 운영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 위탁관리
- 시공중인 시설은 준공시점에 맞추어 위탁관리
- 신규수요와 관련 위탁사무는 가능한 한 Turnkey방식에 의한 위탁
 - 설계, 시공, 운영관리를 처음부터 일괄입찰 방식

3. 위탁사무의 범위

-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및 제2공설운동장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4. 위탁기관

- 3년으로 하되 연장가능

5. 수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6. 민간위탁 방법

-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7. 시직영시 문제점과 민간위탁 필요성

- 주민편익시설이 준공되면 파주시가 인수받아 정상운영을 시작하여야 하나, 직영관리시 현재 동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기술 및 인력이 없음.
- 직원의 순환보직등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며,
- 운영관리 인력구조의 비효율적인 구성 즉 실제운영 요원보다 행정요원이 많아 이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출로 시재정부담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비전문성 운영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8. 민간위탁의 효과

○ 시제정 부담 완화

- 주민편익시설 및 제2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부담이 크게 완화됨.

※적자 발생시 수탁업자와 시에서 부담

○ 운영관리 요원의 증원 소요 감축효과

- 위탁운영관리시 운영관리 분야에서 인력감축 등 자발적인 경영 효율성 노력이 강화됨.

○ 경쟁력확보 및 기술개발촉진

- 기술 및 경험축적이 풍부한 전문수탁 기관 및 민간회사가 운영함으로써 경영이 활성화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운영 효율 개선
- 경영특성에 적합한 운영기법개발 및 적용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수익 기대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파주시가 친환경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관리센터내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스포츠센터등 편익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인근지역에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제2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 이들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내용타당성

- 위 동의안건은 파주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설되는 종합스포츠센터(주민편익시설)와 보강공사중인 제2공설운동장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서, 이같은 대규모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우리시는 지속적인 관리·운영등 공공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문적인 수탁자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다음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첫째,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택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설별 사용요금의 적정성 여부와 이용객 수요 여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둘째, 위탁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지?

셋째, 각종 시설중 수익이 많은 시설과 적은 시설이 있을 것인데 일괄 위탁 또는 분할위탁중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넷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가능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동 기간은 시설이용객과 수익여부에 따라 수탁자의 서비스문제와 연계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너무 긴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끝으로, 동 안전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해야 하는데, 동 위원회에 의원 2인이상을 포함 구성토록 되어 있음으로 향후 의회에서 동 시설의 위탁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